

# 精油社 原油비축제고를 위한 調整命令

—動力資源部—

**동** 력자원부는 지난 8월 1일 석유수급조정 명령을 발동, 精油 5社의 민간비축물량을 26일분씩으로 의무화하고, 회사별 비축물량을 고시, 8월말까지 한당물량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26일분의 의무비축원유중 6일분(3백만배럴)에 대해서는 정부의 석유비축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다음은 동자부의 조정명령 내용이다.

## 1. 原油비축 의무 在庫量

국내 精油 5社(이하 「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월 단위 일일 평균 在庫量(이하 「비축의무 기준량」이라 한다)으로 다음의 物量을 보유·유지하여야 한다.

(84年度 비축의무자의 自体備蓄 일일수요)

社 別 구 분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83년도판매실적비율(%)	44.3	35.0	9.2	9.1	2.4	100
84년도판매계획(B/D)	228,145	180,250	47,380	46,865	12,360	515,000

(나) 84년도 정부지원 비축물량은 原油 1377-5099(84. 6. 18)에 의거, 배분된 물량으로 다음과 같다.

(84年度 政府지원 비축물량)(단위: 천배럴)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1,329	1,050	276	273	72	3,000

(1) 備蓄義務基準量은 「자체비축제고량」과 「정부지원비축물량」을 합한 物量으로 다음 算式에 의거 산출한다.

(가) 일일평균 비축의무 基準量

$[(\text{備蓄義務者의 일일수요}(B/D) \times 20\text{일}) + \text{政府지원 비축물량}]$

(나) 월간 비축제고 累計義務量

일일평균 비축의무 기준량 × 해당월일수

(2) 自体備蓄의 일일수요는 당해년도 비축의무자별 판매계획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부지원 비축물량은 동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배분한 물량으로 한다.

(가) 84년도 비축의무자의 自体備蓄 일일 수요는 다음과 같다.

(3) 備蓄에 포함될 物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육상 또는 지하 저유시설내의 재고

(나) 해상저유시설내의 재고

(다) 국내 항구에 입항하여 당해세관에 입항 보고(입항일자 기준)를 완료하고 정박중 또는 하역중 잔여 유조선내의 물량

(라) 국내 파이프라인내의 물량 단, 1일 1회산업원칙

## 2. 備蓄義務 基準量의 통제관리

### (1) 통제 기준

월평균 일일 在庫量 개념으로 통제하되 월단위로 일일 재고를 누계 평균하여 일일 의무기준량 보유 여부를 통제한다. 단, 월단위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말한다.

### (2) 統制方法

#### (가) 비축계획의 제출

비축의무자는 저장상태별 물량 및 선적 계획 등을 포함한 익월 재고수준유지 계획을 매월 25일까지 動資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장부의 비치 보관

비축의무자는 저장상태별로 일일 在庫量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현장에 비치하고 이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재고현황 보고

비축의무자는 매월말 기준으로 하여 당해월의 저장상태별 일일 재고현황을 익월 5일까지 石油開發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조치 및 점검

石油開發公社는 精油社別 재고현황 보고와 石油協會 재고日報 등을 조합 심결하여 부족량이 발생한 경우 제「라」항의 규제조치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물량분에 대하여는 소요조치를 해당사에 통보·집행하고 이를 포함한 不足物量에 관하여 동자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石油開發公社는 재고현황을 점검한다.

## 3. 備蓄에 대한 정부 지원

(1) 정부지원 비축물량에 대한 구입자금은 동력자원부 고시 제 84-24호에 의거 융자 지원한다.

(2) 정부지원 비축물량에 대하여는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를 유예한다.

## 4. 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조치

(1) 정부지원분 의무부족량에 대한 규제조치

비축기준량에 미달되는 물량중 정부지원 비축물량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제조치하되, 징수유예된 石油事業基金과 융자금액에 대한 위약금으로 연체이자를 매월말일을 미달시점으로 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징수한다.

#### (가) 유예된 石油事業基金 징수

징수금액 산출은 다음과 같다.

[월누계 미달물량(=월누계 의무기준량-월누계 실제 재고량)÷해당월일수]×미달시점의 石油事業基金 징수액

#### (나) 융자위약금으로 연체이자 징수

징수금액 산출은 다음과 같다.

의무부족물량×배열당 융자단가× $\frac{\text{해당월일수}}{365}$

×은행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자를 단, 의무부족물량이란 유예자금 징수시에 산출된 비축물량을 말한다.

#### (2) 기준비축 의무부족량에 대한 규제조치

비축의무 기준량에서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石油事業法 제13조 및 제13조의 2, 또는 石油事業法 제26조 제4호에 의거 규제조치한다. 다만, 정부지원비축물량 부족에 대한 규제조치는 (1)항의 연체이자 징수로 가름한다.

#### (3) 규제조치의 특례

비축의무자의 비축의무 기준량 미달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동자부 장관은 石油事業基金 및 연체이자 징수 등 규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원활한 국민경제운동을 위하여 정부가 비축인유 방출을 지시할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비축의무 기준량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다) 국제 원유시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原油도입이 중단되어 비축의무기준량에 미달된 경우

(라) 기타 위 각 항의 사유에 준하는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시 행

(1) 이 조치는 84. 8. 6부터 시행한다.

(2) 다만 84. 8월분은 8. 6부터 8. 31일까지 계산한다.